#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17 선고 2016나40032 판결 [구상금 등 청구]

## 재 판 경 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17 선고 2016나40032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16 선고 2015가단5337993 판결

## 전 문

**원고, 항소인**한국주택금융공사

**피고, 피항소인**A

**변론 종결**2016. 9. 29.

**판결 선고**2016. 10. 17.

**제1심판결**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16. 선고 2015가단5337993 판결

## 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

2. 피고는 원고에게 46,733,178원에 대하여 2015. 3. 30.부터 2015. 8. 31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2016. 2. 4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# 이 유

## 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아래의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46,845,978원 및 그 중 구상원금 46,733,178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5. 3. 30.부터 2015. 8. 31.까지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. 2. 4.까지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가. 피고는 2013. 9. 17.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였고, 이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
나. 피고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, 보증원금을 45,000,000원, 보증기간 2013. 9. 27.부터 2015. 9. 27.까지로 정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보증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 당시 원고와 피고는, 만일 피고의 대출금 상환지체 및 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원고가 위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,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.

다.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15. 3. 30.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원금 45,000,000원, 이자 1,733,178원 합계 46,733,178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.

라. 당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. 12. 1.부터 2015. 8. 31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%다.

마.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잔여 구상금 등 채권은 2015. 10. 12.을 기준으로

46,845,978원(보증금 지급액 46,733,178원 + 미수추가보증료 112,800원)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**2. 결론**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당심에서 추가로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.

**재판장판사**심규홍

**판사**이성은

**판사**김지향